

인천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가단2362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백승복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

피고B

변론 종결 2024. 9. 3.

판결 선고 2024. 10. 1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6.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12. 21.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2. 20., 이자율 연 9.70%, 지연손해금을 연 12.7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후 C은 위 대여금 약정에 따른 변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25236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7. 9. 'C은 원고에게 13,306,627원 및 그 중 7,678,123원에 대하여 202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7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9. 2. 확정되었다.

다. C의 아버지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21년 6월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 자녀인 F, G, 피고, C이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6.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위 계약 중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부분을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인정 여부

앞선 인정사실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천안시 서북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조회 결과, 이 법원의 H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체결일인 2021. 6. 15.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47,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30,000,000원 이하의 해지환급금 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다른 적극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체결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C의

상속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C은 위 지분 처분 당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에게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피고가 망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감사의 의사표시로 체결된 것이라거나 망인의 배우자를 부양하라는 의미에서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항변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과 피고는 남매관계에 있는 점, C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체결 전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47,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망인이 2020. 7. 28. 생활고를 겪던 C에게 15,000,000원을 입금하여 주기도 한 점, C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22. 1. 27. 수원회생법원 2022하단120호로 파산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체결로 인하여 C의 책임재산이 일실되어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고,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원재

별지